

복지용구 제도 변경사항 안내

복지용구 사업을 하시는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신체 및 건강의 유지·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등 복지용구 제도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9(2018.5.8)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와 관련하여,
- 기존 내구연한 내에서 1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 중, **성인용보행기에 한하여 이용가능 개수가 2개로 확대되어 2018.9.1.부로** 성인용보행기 추가 판매가 가능합니다.
... 내구연한(5년)이내의 성인용보행기 제품 2개까지 이용 가능

※ 성인용보행기 추가 판매계약건은 **9.5.(수)부터 전산입력 가능하오니, 9.1~ 9.4. 판매계약건은 9.5(수) 이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**

- 이 사항은 **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한하여** 적용되며, 타 법령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신 성인용보행기가 1개 이상 있는 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아울러,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에 따라 **2018년 말(예정)** 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후 등재된 **욕창예방매트리스의 구입비용에 따라 판매 가능하며, 요실금 팬티 판매 가능 시기도 동일합니다.** ※ 추후 세부일정 별도 안내 예정

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용구사업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공단에서도 복지용구사업소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불편한 사항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